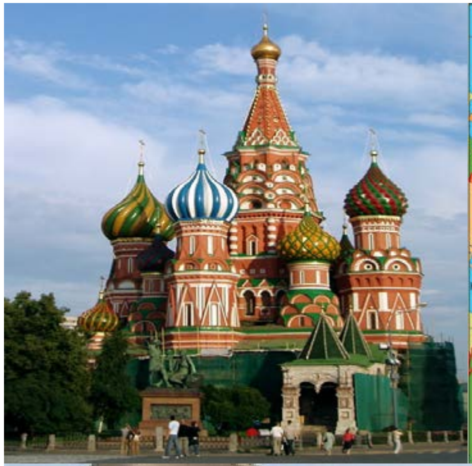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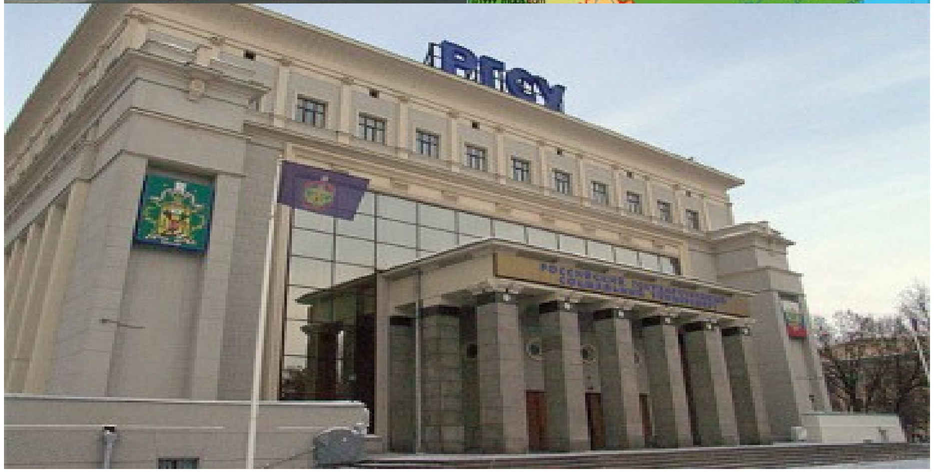

2017학년도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학생교류프로그램 모집 안내

(교환학생, 복수학위)

I. 개 요

- **1. 교 환 학 생**

- 본교와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학기를 이수하면서 상대국의 언어, 문화 등을 배우고 본교에서 학점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**2. 복 수 학 위**

- 본교와 해외 자매대학 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본교에서 2년, 상대대학에서 2~3년 동안 수학한 후 이수한 학기와 학점을 상호 인정받고, 양 교의 졸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양 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.

Ⅱ. 모집요강

구 분	교환학생		복수학위
파견 국가	카자흐스탄	러시아	카자흐스탄
파견 대학	카작국립대 (알마티) 크즐오르다국립대(크즐오르다) 기타 카작 자매대 (사전협의 후 지원)	러시아국립사회대 (모스크바)	카작국립대(알마티)
파견 기간	1년 (2017. 9 ~ 2018. 8)	1년(2017. 9~2018. 8)	2~3년(2017년 9월 시작)
지원 자격	가. 지원시점 학부 1학년 이상(편입생 1학기 이상)을 수료하고 졸업 최종학기가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자 나. 지원시점 총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 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한 자 라. '파견직전학기까지 카작/러시아어 과목 6학점 이상 이수(예정)인 자' 마. 조기졸업 대상이 아닌 자		가. 출국 전까지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한 자 나. 지원시점 총 평점평균이 3.5 이상인 자 다. '파견직전학기까지 카작/러시아어 관련 과목 15학점 이상 이수(예정)인 자'
비 용	- 학비 : 본교 납부 / 자매대학교 면제 - 기숙사비 : 전액 면제 - 항공료, 식비 및 기타비용 : 자비부담		

III. 지원안내

- 가. 제출서류 : ①지원서
  ②학업계획서
  ③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
  ④전공교수추천서
  ⑤성적증명서
  ⑥재학(휴학)증명서
  ⑦여권사본
  ⑧병무청 유학허가원(군미필자)
  ⑨2017-1학기 수강신청확인서 각 1부

- 나. 제출기한 : 2017. 3. 20(월) ~ 3월 31일(금)

- 다. 제 출 처 : 대외교류센터(본관 1층, Tel: 031-280-3424,
  kimmh@kangnam.ac.kr)

IV. 선발일정

지원자	지원서류 작성 및 제출	**2017. 3. 20(월) ~ 3. 31(금)**
	▼	
대외교류센터	서류심사 (필요시 면접 실시)	2017. 4. 3(월) ~ 4. 14(금)
	▼	
대외교류센터	합격자 발표	2017. 4. 17(월) 예정
	▼	
대외교류센터	자매대학에 지원서류 발송	2017. 4월 합격자발표 후
	▼	
자매대학	서류심사	2017. 5 ~ 7월
	▼	
자매대학	초청장 발급	2017. 8월
	▼	
대외교류센터	오리엔테이션	2017. 8월 중순
	▼	
최종 합격자	비자 발급	2017. 8월 말
	▼	
	출국	2017. 8. 28~9.1(예정)

V. 학교정보

- ① 카작국립대학교 (Al-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: www.kaznu.kz)
- ②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 (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: www.korkyt.kz)
- ③ 러시아국립사회대학교(Russian State Social University: www.rgsu.net)
- ④ 기타 카작 자매대: 동카작국립대, 유라시안국립대, 카스피안국립기술공학대, 카작국제관계및세계언어대, 카작경제대학교 등
  (※ 자매대와의 사전 협의 후 지원 가능)

VI. 기 타

- 가. 자세한 사항은 본교 ‘학생교류에 관한 규정’에 의함
- 나. 지원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

※ 교환학생 참고사항

- ▣ **파견기간 및 횟수:** 교환학생의 파견기간은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동일국가 및 동일대학에 대해서는 2학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한다.

- ▣ **등록:** ① 등록금 납부는 제4조를 준용한다. ② 교환학생 기간의 수강신청은 면제한다.
- ***제4조(본교생의 등록금 납부)** ① 학생교류를 통해 교류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의 매학기 등록금 등은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다른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.
  ② 전항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자가 8학기를 초과하여 수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교류대학의 신청학점 수를 기준으로 학칙시행세칙 제6조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③ 졸업대상자가 교류대학의 성적통보 등 학사행정의 지연으로 졸업이 유보된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다음 학기 재학생으로 한다.

- ▣ **휴학 및 수학포기:** ① 교환학생기간 동안은 질병,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.
- ② 수학의 포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▣ **학점취득제한:** 교환학생의 교류대학 학점취득은 졸업학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
- ▣ **학점의 인정 등:** ① 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제12조를 준용한다
- ** **제12조(교류과목 인정)** ①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본 대학 교과과정에 개설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한다. 그 학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  1. 전공과목의 인정은 당해 학부(과)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2. 교류대학에서 교양선택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.
  3. 전 1, 2호 이외 또는 교류대학 성적표에 이수구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교과목은 교무처장이 정한다.

  ② 교과목별 학점 수는 교류대학의 학점 수와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③ 전 2항의 학점인정은 당해 학기에 수강신청한 교과목이어야 한다.

- ②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등급 또는 실점수를 등급화한 성적 중 학생에게 유리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교류대학의 성적에 등급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교류대학과의 협의에 의거하여 정해진 성적인정 기준을 적용한다.
- ③ 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하되 누계 평점평균에는 합산하지 않는다.
  ④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교무처장과 해당 학부(과)장이 협의하여 학점인정 제외 교과목을 결정하고 이를 학점인정 시 제외한다.
- ⑤학점교류에 의하여 이수한 성적과 학점은 포기하지 못한다.

- ▣ **학적표기:** 교환학생의 해당 학기 학적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국가 및 대학명을 표기한다.

※ 복수학위 참고사항

▣ **선발전공**: 지원자는 본 대학에 입학한 학부(과)에 개설된 전공 중 희망전공을 선택하여야 하고, 유사한 전공이 외국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발한다.

▣ **선발인원**: 선발인원은 양 대학 간의 동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양 대학 간의 문서를 통한 합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.

▣ **파견기간:** ①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최소 2년(4학기)으로 한다. 다만 다른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.
② 전항의 수학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 연장에 대하여 양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▣ **등록:** 복수학위생으로 파견된 기간의 등록은 제30조를 준용한다.

* **제30조(등록)** ① 등록금 납부는 제4조를 준용한다. ② 교환학생 기간의 수강신청은 면제한다.

* **제4조(본교생의 등록금 납부)** ① 학생교류를 통해 교류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의 매학기 등록금 등은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다른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.
② 전항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자가 8학기를 초과하여 수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교류대학의 신청학점 수를 기준으로 학칙시행세칙 제6조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③ 졸업대상자가 교류대학의 성적통보 등 학사행정의 지연으로 졸업이 유보된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다음 학기 재학생으로 한다.

▣ **휴학:** 교류기간 중 휴학은 1회로 한정한다.

▣ **수학포기:** ① 수학의 포기에는 양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 포기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은 이 규정에 의거 심사·인정한다.

▣ **학점취득제한:**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한다.

▣ **학점의 인정 등:**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구분 및 성적 등은 제12조, 제13조, 제15조를 준용한다.

* **제12조(교류과목 인정)** : '교환학생 참고사항' 참조

* **제13조(성적인정)** ①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등급을 우선으로 한다.
② 전항의 등급이 A+, A, A- 등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A+는 A+로, A와 A-는 A로 하고, A, B, C, D, F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실점수를 학칙 제43조에 의한 등급으로 인정한다

* **제14조(성적표기)** 교류학점의 표기는 "교과목명(국내교류)"로 한다.

* **제15조(포기제한)** 학점교류에 의하여 이수한 성적과 학점은 포기하지 못한다.

▣ **학적표기:**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교류학기 학적에 파견된 국가 및 대학명을 표기하여야 한다.

▣ **전공이수:** ① 제1전공은 본 대학에 입학한 학부(과)에 개설된 동일 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②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위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 다만 이수한 교과목은 해당 학부(과)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전공교과목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.

▣ **졸업종합평가:**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성적 및 취득학점이 본 대학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에는 졸업종합평가를 생략한다.

▣ **졸업사정:**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이 본 대학 졸업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대체하여 인정한다. 다만 그 성적은 졸업종합심사 1주전까지 도달하여야 한다.

▣ **학위:** 학생교류에 의하여 대학 소정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그 학위는 교류협정에 의한다.

※ 교환/복수학위생 대상
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성적심사 안내

1. 성적심사 기준

가.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

나.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학기별 지급 일정을 기준으로 적용 :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장학금 지급일정 내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 지급 일정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

다. 국가장학금 수혜 후 위 성적 기준 미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

구분	성적·이수학점 기준
신입생.편입생 재입학생	•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재학생	•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-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※ 부분등록학기,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※ Ⅱ유형은 대학이 소득 및 성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적용
	•기초~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(70점) 경고제 적용

※ 참고 : 파견 교환/복수학위생 중 직전학기 성적 감소로 인하여 장학금 환수 사례 발생